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96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4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교부항목 추가	11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8.
3. 회부연월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우려를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공지능 디바이드(AI Divide)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학생 및 농어촌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과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짧은 영상 및 이미지 중심의 정보 소비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문해력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사회적 소통 역량 등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근간인 바 공교육 내에서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한시적으로 연장,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집중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

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 ----- <u>2029년 12월 31</u> 일----- ----- ----- -----.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29년</u> ----- -----.

나. 검토의견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및 특례 규정 검토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되며,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¹⁾

-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됨.²⁾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에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필요시 조정 가능)
	지역현안수요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
	재난안전관리 (10%)	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 교육세 세입액 중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다만, 2023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법

제5조의3이 신설(2023. 12. 31.)³⁾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년간은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p, 약 5,6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보통교부금(97%→96.2%)과 특별교부금(3%→3.8%) 간 배분 비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조정(±0.8%p)하여 AI 교원연수 등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한시적 교부 기준 비교]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97%</u>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u>96.2%</u>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3%</u>	내국세의 20.79% 중 <u>3.8%</u>
	국가시책	3%의 60%	좌동
	지역현안수요	3%의 30%	좌동
	재난안전관리	3%의 10%	좌동
	디지털교육혁신	<u><신설></u>	<u>0.8%의 100%</u>

* 교육세 세입액 중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교부금 규모는 71.67조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금과 그 세부내역 중 하나인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각각 2.66조원, 5,608억원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4년 5,333억원이 편

성된 이후 2025년 5,459억원, 2026년 5,608억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3예산	2024예산	2025예산	2026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7	688,732	702,812	716,687
♦ 보통교부금		735,334	663,385	677,323	690,049
♦ 특별교부금		22,272	25,347	25,489	26,638
	국가시책	13,363	12,009	10,338	12,618
	지역현안	6,682	6,004	7,269	6,309
	재난안전관리	2,227	2,001	2,423	2,103
	디지털교육혁신	<신설>	5,333	5,459	5,608

자료: 교육부

(2)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 정부는 전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학교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며, 고등교육 혁신과 기초·인문학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AI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음.⁴⁾

4)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

-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현재 교육정책은 단순한 ICT 활용을 넘어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도 AI 기반 학습 분석, 맞춤형 학습 지원, 다양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 체계 유지 및 확대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울산, 부산, 인천, 충남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한시적 특례 조항의 목적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규정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추진된 것이므로 일몰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특별교부금은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통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고,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분명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집행 및 관리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사용되는 실정이며,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종래 계속되었음.⁵⁾

이와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2025년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을 심사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⁶⁾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결정적 시기로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연장을 통한 재원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5)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6.11. 감사원. 「특정과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2008 국민권익위원회,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용 전면 공개: 교육특별교부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2010.12.7

6) 해당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7호, 강경숙의원 대표발의)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것임.

2.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교부항목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교부 항목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대신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지원, 취약계층 인공지능 학습 지원,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지원을 추가하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4.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u>	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지원 사업 등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u><신 설></u>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학습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u><신 설></u>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u>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u>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지원 사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③ ----- ----- <u>절차</u> ----- ----- -----.

나. 검토의견

□ 최근 학교 교육은 인공지능,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학습도구 활용을 위한 교사 지원 부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환경 격차, 교육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업 혁신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교육이 확대될수록 학생 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문화학생, 농어촌 학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은 디지털 학습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지원 인력 부족, 교육콘텐츠 접근성 문제, 언어·학습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취약계층 학생에게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2026년에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251억원),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63억원),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6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6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1차 편성액]7)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사업 내용
디지털 교육혁신		516,408	(100%)
	①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381,408	(74%)
	④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25,100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한국어교육 시스템 기능 개선 등
	⑤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6,28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특수교육 AI 교육자료 개발·보급
	⑥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6,000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⑦ 디지털 대응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8,210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②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지원	135,000	(26%)

자료 : 교육부

□ 한편,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및 독해력 저하 문제가 중요한 교육 정책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문해력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초 역량이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이해 능력의 핵심 요소임.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기기 중심의 학습 환경, 독서 시간 감소, 영상 중심 정보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독서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독서교육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기반 독서활동, 독서·토론 수업 등 독서교육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됨.

7) <참고자료 1>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추진 내용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육 시대에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재원(82억원)으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교부 항목에 학교의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지원, 취약계층 인공지능 학습 지원,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지원을 추가하여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어떠한 정책 목적에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정책적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지나,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유형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교육부의 계획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재정수요항목(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은 디지털 교육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고,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AI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확충과 콘텐츠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시교육청은 기존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 등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 항목이 있으며,⁸⁾

교육부가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는 의견임.

□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초·중등 학생들이 소외없이 AI시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8) <참고자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의 관련 내용

참고 1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추진 내용

< 2026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1차 편성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사업 내용
디지털 교육혁신		516,408	(100%)
①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381,408	(74%)
① AI·디지털 활용 수업학교 지원	79,400	AI·디지털 활용 수업학교 지원 초·중·고등학교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운영 등	
② AI·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AI 중점학교 운영	40,600	AI 중점학교 운영 지원 AI·체험 교육 환경 조성 등	
③ AI·디지털 교육 환경 (인프라) 조성	104,997	디지털 튜터 양성 및 지원단 운영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 및 테크센터 운영 등	
④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 학생 교육 지원	25,100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한국어교육 시스템 기능 개선 등	
⑤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	6,28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특수교육 AI 교육자료 개발 보급	
⑥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6,000	농어촌학교 디지털 융합 교육 지원	
⑦ 디지털 대응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8,210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⑧ AI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지원	15,450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AI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등	
①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	33,380	선도교사 및 전체 교사 연수 기반 구축 및 지원	
②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44,113	17개 시도교육청 연수 시행 및 지원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집행)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17,876	학교 컨설팅 연수 지원	
②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지원		135,000	(26%)
① 디지털 새싹(AI·디지털 기반 학습관리 및 AI·디지털 교육 지원)	90,000	방과후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지원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5,000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지원	

자료 : 교육부

참고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의 관련 내용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4.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지원비	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학교 수, 평생교육 시설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공립 유치원은 제외한다)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수
	나. 기초학력 진단지원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기초학력 보장지원비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라. 학생마음건강지원비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마음건강지원 대상 학생 수
	마. 지역 간 균형교육복지지원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및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바. 계층 간 균형교육복지지원비	수급자 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학생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기기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 충전설비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